

대한축구협회 성희롱·성폭력 고충 처리 매뉴얼

2025. 11. 19 (신규 제정)

I. 목적

본 매뉴얼은 대한축구협회(이하 “협회”) 및 회원단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상담 → 신고 → 조사 → 보호 → 조치 → 재발방지에 이르는 전 과정의 절차를 구체화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신속·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본 매뉴얼은 협회의 「성희롱·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」을 근거로 하여 작성되며, 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그 절차 운영을 보조한다.

II. 적용범위

본 매뉴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1. 협회 및 그 소속 임직원
2. 시도협회 및 연맹단체와 그 소속 임직원
3. 협회에 등록된 단체(팀)·선수·지도자 등 그 소속원
4. 심판, 감독관 등 기타 협회의 행정적용을 받는 대상
5. 사임·미등록 등으로 소속되지 않았으나 협회 통제 범위 내 또는 업무 관련성 있는 제3자

III. 관련 법령 및 기준

-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
-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
-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통합지침
- 문화체육관광부 「2025 폭력예방 및 대응 매뉴얼」
- 대한축구협회 「성희롱·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」

IV. 고충처리 체계의 구성

1. 고충상담창구

- 협회 내 전담부서(컴플라이언스실)에 설치
- 상담원 2인 이상(남·여 각 1인 이상) 지정
- 전화·이메일·온라인·방문 방식으로 접수 가능
- 외부 전문가 자문 또는 참여 가능

2. 고충처리 담당 역할

(1) 고충상담원

- 상담·신고 접수
- 조사 절차 안내
- 피해자 보호 필요성 검토
- 기록·보관 및 비밀유지
- 외부 전문기관 연계

(2) 담당 부서(컴플라이언스실)

- 조사 총괄
- 조사계획 수립

- 인권소위원회 보고
- 징계 회부 및 행정지원

(3) 인권소위원회

- 성희롱·성폭력 판단 심의
- 보호·분리조치 검토
- 재발방지 대책 권고 및 명령
- 필요 시 공정위원회 회부

V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(문체부 매뉴얼과 동일한 단계 구성)

【1단계】 상담(비공식 절차)

- 상담 신청 방법
 - 전화 / 이메일 / 온라인 신고 / 방문 / 대리 신고
 - 익명상담 가능(단, 공식 조사 개시는 불가)
- 상담 내용
 - 피해 사실 파악
 - 피해자 의사 확인
 - 신고·조사 절차 안내
 - 긴급 보호 여부 판단
 - 2차 피해 발생 여부 점검
- 즉시 분리 필요 시
 - 제11조에 따른 임시조치 검토(근무지 변경, 접촉 제한 등)

【2단계】 신고(공식 절차 개시)

- 제출 서류
 - 별지 제2호서식(성희롱·성폭력 조사 신청서)
- 신고자 자격
 - 피해자
 - 피해자 대리인
 - 목격자 또는 인지한 제3자
 - 내부 종사자 누구든지 가능
- 신고 접수 후 조치
 - 즉시 접수 기록 작성
 - 피해자 보호 필요성 1차 판단
 - 외부 전문기관 연계 희망 여부 확인
 - 인권소위원회 또는 상급 부서에 보고

【3단계】 조사

- 조사 개시 요건
 - 신고 또는 인지 후 지체 없이 착수
 -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 가능
- 조사 방법
 - 피해자·행위자·목격자 진술
 - 관련 자료 및 증거 검토
 - 반복성·지속성 판단
 - 2차 피해 여부 분석
- 조사 중 보호조치
 - 피해자 신뢰관계인 동석
 - 신상·비밀 철저 보호
 - 필요시 임시조치 실행(제11조)

- 중지 요건
 -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 중단 요청
 - 타 기관 조사 개시 시 중복조사 지양

【4단계】 판단 및 조치

- 조사 결과 보고
 - 협회 또는 회원단체는 조사 완료 후 인권소위원회에 결과 서면 보고
- 판단 주체
 - 인권소위원회 (필요 시 위원 제척·기피 가능)
- 조치 범위
 - ※ 지침 제13조·제14조
 1. 행위자 징계
 2. 근무 장소 변경
 3. 직무정지 또는 배치전환
 4. 피해자 보호·상담·치료 지원
 5. 재발방지대책 수립
 6. 규정·관행 개선 명령
 7. 공정위원회 회부

【5단계】 절차 종결 및 기록 관리

- 사건 종결보고
 -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통보
 - 대리인에게도 필요시 통보
- 기록 보존

- 사건 기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
- 비밀유지 의무 필수(제9조)
- 재발방지대책
 - 교육 강화
 - 조직문화 개선
 - 규정 개정 및 점검

VI.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

1. 피해자 보호 원칙

- 피해자 의사 최우선
- 비밀보장
- 불이익 조치 금지
- 보호조치 즉시 시행(필요 시)

2. 2차 피해 유형

- 신상정보 노출
- 반복 진술 강요
- 음해·집단 따돌림
- 인사상 불이익
- 여론 압박

3. 2차 피해 확인 시 조치

- 관련자 징계
- 공정위원회 회부
- 조직 내 재발방지교육 실시

VII.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

- 연 1회 법정교육 실시
- 협회·회원단체 대상 특별교육·직무교육 가능
- 선수·지도자·심판 등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
- 안내문자·포스터·영상 활용
- 교육 참석률 관리 및 예산 반영

VIII. 서식

※ 지침 별첨과 100% 동일하게 유지

- (별지 1호) 고충상담원 서약서
- (별지 1-2호) 인권소위원회 위원·조사위원 서약서
- (별지 2호) 성희롱·성폭력 조사 신청서

[축구인 인권소위원회 위원·조사위원] 서약서	
성명	
소속 및 직위	
주소	
연락처	
본인은 대한축구협회 축구인 인권소위원회 위원/조사위원으로서 「성희롱·성폭력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고충심의(조사) 업무를 수행하고,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한 사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, 관련된 정보를 누설 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.	
20 년 월 일	
성명: (서명 또는 인)	

성희롱·성폭력 조사 신청서					
접수일	20 . .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대리인	성 명		소 속	
		※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직 급		성 별
	행위자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신 청 내 용					
	※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.				
요구사항	1. 성희롱의 중지() 2. 성희롱에 대한 행위자의 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성희롱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() 5. 기타()				
위 신청인(또는 대리인)은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.					
20 년 월 일					
신청인			(서명 또는 인)		
대한축구협회장 귀하					